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3.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2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11. 21.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2007.12.3)

상정, 심사, 가결

제132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위원회(2007.12.10)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종 전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변 경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 로 변경

3. 검토보고 ————— 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